

2016년 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2017. 1

이은형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요 약

-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3/4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61.6으로 조사됨.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2년간의 추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분기의 전망치가 48.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의 시장상황이 예상처럼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2017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53.5로 이번 4/4분기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나타남. 이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동계, 경제상황의 악화와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예년과 동일하게 정부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같은 지원정책에 따라 차츰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51%)’가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27%)’는 그 다음으로 많았음. 그 밖에는 ‘민간투자 활성화(12%)’, ‘입·낙찰제도의 개선(6%)’, ‘부동산규제완화(2%)’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7.6%)’이 변함없이 지적되고 있으나 ‘인력난·인건비 상승(22.4%)’도 지난 3/4분기(21.5%)에 이어 다수 응답으로 자리를 굳힘.
- **[자금사정지수]**는 3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다음 분기에는 이번 분기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62%)’이 과반수를 훌쩍 넘었으며 ‘금융기관 차입(31%)’의 비중은 지난 3분기와 같은 비중을 나타냄. 그 다음으로는 ‘보유자산 매각(2%)’, ‘회사채 발행(1%)’과 ‘사채시장 조달(1%)’, ‘상생협력펀드 활용(0%)’이었음.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3분기보다 크게 상승함.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 24일, 하도급공사 39일이었으며 **[공사대금의 수령 형태]**는 ‘전액 현금(73%)’이 가장 많았고 ‘현금+어음(18%)’의 비율이 크게 늘어남. ‘어음대체결제수단(5%)’의 비중은 3/4분기보다 늘어남.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다음 분기에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응답업체의 80%가 ‘60일 이내’ 만기일의 어음을 수령했으며 ‘30일 이하’의 비율이 3분기보다 증가함.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만기일까지 보유(36%)’한다는 응답이 크게 떨어지고 시중은행 할인(29%)의 응답비율이 증가해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자금유통상황을 반영함.

- **[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는 3분기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인건비지수]**도 소폭 하락함. **[자재·장비수급지수]**는 2016년은 물론 2015년 2분기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자재비지수]**는 2016년 1분기부터의 하락추세를 지속함.
- **[이중계약서 작성]**은 12%가,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8%,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14%가 겪은 것으로 집계됨.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상황은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주시 재입찰 경험]**은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1~2회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회(41%)라고 응답한 업체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남.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정기간보다 길다는 응답은 33%로 크게 증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비율은 46%였음. **[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을 서울보증보험으로 강요받은 경우는 4%,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요구]**는 다시 증가한 22%로 조사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60%)’와 ‘하도급계약 체결시(31%)’가 가장 많았음.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원사업자의 규모]**는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업체가 총 77%였음. **[미교부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교부거부(49%)’와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22%)’이 다수 응답이었음.
-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95%가,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는 97%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방법으로는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55%)’가 가장 시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32%)’과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11%)’가 지목됨.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응답업체의 96%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교부한 것으로,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는 응답업체의 13%가 경험함.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는 ‘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32%)’,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29%)’,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서(23%)’의 순이었음.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경험한 응답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이같은 독소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됨.
-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는 본문의 <표-28>에 정리됨.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의 실태와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분기별로 설문지를 통해 시의 적절하게 포착함. 그리고 경제통계로 포착되지 않고 시계열 자료를 통한 장기분석이 요구되는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¹⁾를 활용함.
- 원·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본 조사는 향후 경기전망,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전문건설업의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2. 조사내용

- 2016년도 4/4분기의 전문건설업 실태와 기업경영상의 애로점을 조사하기 위해 총 11개 항목,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건설경기전망,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공사수주, 공사대금 수령, 하도급 불공정거래, 기술·기능인력 수급, 자재·장비 수급, 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으로 구성됨.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회에 가입한 주요 전문건설업체에 재직 중인 289명의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현황조사를 위한 자계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1)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이용함.

- 설문지를 배포한 289개사는 수도권 업체가 96개사(33.2%), 지방권 업체는 193개사(66.8%)로 구성되며, 기업규모와 본사 소재지(수도권·지방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설문지를 배포한 289개사 중 86개사(유효회수율: 29.7%)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4/4분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분석에 활용됨.

<표-1>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건설경기(전문건설업) 전망	①경기전망 ②경기활성화 대책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③기업경영 애로사항 ④자금사정 전망 ⑤자금조달 방법
공사수주	⑥공사수주 전망
공사대금 수령	⑦대금수령 소요일 ⑧수령형태 ⑨수금전망 ⑩수령어음 평균만기일 ⑪어음의 현금화 방법/할인율
하도급 불공정거래	⑫이종계약서 작성경험 ⑬불공정 특약조항 유무 ⑭부당감액 피해사례 ⑮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유무 ⑯전자 입찰시 재입찰 ⑰하자담보책임기간 ⑱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령 ⑲지급보증서 미수령 사유 ⑳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 지정 ㉑하도급계약이행보증율 초과강요 ㉒하자보수보증율 초과강요 ㉓무리한 하자보수요구 ㉔공상처리/비용
기술·기능인력 수급	⑮기술·기능인력 수급전망 ⑮인건비 전망
자재·장비 수급	⑮자재·장비 수급전망 ⑮자재가격 전망 ⑮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불공정거래의 피해사례	⑮발주자/원도급자로부터의 부당피해 ⑮공사수주 및 계약단계 ⑮시공단계 ⑮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단계 ⑮유지관리단계 ⑮자재·장비업자로부터의 부당피해 ⑮기타 건설공사 수행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⑮지급보증서 교부시점 ⑮원사업자 규모 ⑮미교부사유 ⑮변경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 교부 ⑮어음만기일에 따른 지급보증서 ⑮지급보증서 교부율 상향
계약이행보증	⑮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 교부시점 ⑮특정 보증기관 강요 ⑮특정 보증기관 강요사유 ⑮현장설명서 특기조건의 전액보상 규정
건설기계보증	⑮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⑮지급보증서 미발급사유 계약이행보증서 수령 ⑮계약이행보증서 미수령사유 ⑮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점

II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및 분석

1.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2017년 1/4분기 전망

-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3/4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61.6(56.3점→61.6점)으로 조사됨.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2년간의 추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분기의 4/4분기 전망치가 48.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의 시장상황이 예상처럼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2>.
- 지난 3분기의 경우 건설투자증가율과 GDP성장률 등이 2분기보다 증가했고 전자재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건설시장의 현황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의 경기판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앞서의 결과는 전체 공사발주의 증가가 하도급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량 증대로까지 이어지는데 필요한 시차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따라서 다음 분기인 이번 4분기에 전문건설업체들의 평가결과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를 4분기 전체의 건설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이에 더해 지난 믹서트럭과 철도파업 등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면서 4분기와 이어지는 동계에도 공사를 지속하는 건설현장들²⁾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4분기의 지수개선을 전문건설업계의 현황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표-2>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추이 및 전망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6년	2016년	2017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경기실적(BSI)	64.6	58.9	67.1	70.1	56.3	61.6	53.5(전망)

2) 실제로 지난 12월 말까지 선주문된 철근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는 추후 레미콘 등의 자재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임.

- **[2017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53.5로 이번 4/4분기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겨울철을 끼고 있다는 점과 함께 경제상황의 악화와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예년과 동일하게 정부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같은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따라 차츰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표-2>.
- 최근 들어 정부와 주요 민간기관들은 2017년의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건설투자증가율에 대한 전망도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임.
- 일각에서는 2017년에 만기도래하는 건설업의 회사채 규모를 거론하며 위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비슷한 지적과 정부대처가 이어진 것을 보면 이로 인한 위기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건설사들의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자금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은 간과할 수 없음.
- 이는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주요 건설사들의 협력업체 등록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우량업체들에게 공사발주가 집중하면서 업계 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소지가 있음. 이는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과도 일면 연결될 수 있는 사항임.
- 하지만 지난 해의 건설투자증가에 따른 건설업 및 관련산업의 호황이 금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계의 평가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음.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51%)’가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27%)’는 그 다음으로 많았음. 그 밖에는 민간투자 활성화(12%)’, ‘입·낙찰제도의 개선(6%)’, ‘부동산규제완화(2%)’의 순으로 나타남 <표-3>.

- 기타 의견으로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분리발주, 소규모복합공사의 발주 등 전문건설업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사발주의 확대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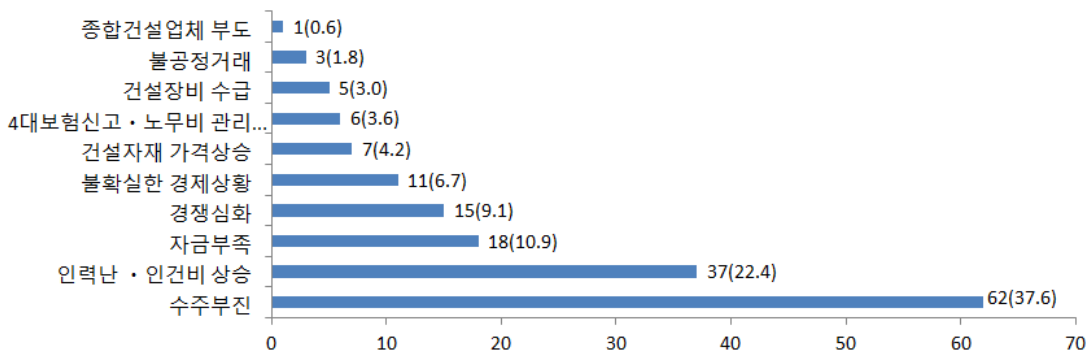
<표-3>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 %)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공공발주 확대	22 (24)	19 (25)	21 (27)	18 (28)	23 (27)
민간투자 활성화	10 (11)	2 (3)	6 (8)	9 (14)	10 (12)
부동산 규제 완화	0 (0)	3 (4)	0 (0)	0 (0)	2 (2)
입·낙찰제도 개선	21 (23)	11 (14)	13 (16)	9 (14)	5 (6)
지역경제 활성화	38 (41)	41 (54)	37 (47)	28 (44)	44 (51)
기 타	2 (2)	0 (0)	2 (3)	0 (0)	2 (2)

2. 경영일반 및 자금사정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부진(37.6%)’ 이 변함없이 지적되고 있으나 ‘인력난·인건비 상승(22.4%)’ 도 지난 3/4분기(21.5%)에 이어 다수 응답으로 자리를 굳힘 [그림-1].
- 그 다음으로는 자금부족(10.9), 경쟁심화(9.1%), 불확실한 경제상황(6.7%), 건설자재 가격상승(4.2%), 4대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3.6%), 건설장비수급(3.0%), 불공정거래(1.8%), 종합건설업체의 부도(0.6%)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응답수, %)



[그림-1]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2016년 4/4분기)

- **[자금사정(자금조달)지수]**는 57.0(54.7→57.0점)로 2016년 3/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다음 분기에는 59.3으로 이번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4>.

- 3분기에 크게 떨어졌던 자금조달지수는 이번 조사에서도 큰 폭의 개선은 나타나지 못했는데 이는 여전히 전문건설업에 대한 금융권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해 종합과 전문을 막론하고 적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제2금융권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4> 전문건설업 자금조달지수 추이 및 전망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2016년 1/4분기	2016년 2/4분기	2016년 3/4분기	2016년 4/4분기	2017년 1/4분기
자금조달	69.2	63.3	57.9	74.0	54.7	57.0	59.3(전망)

- **[자금조달방법]**은 ‘대표자 개인자금(62%)’이 과반수를 훌쩍 넘었으며 ‘금융기관 차입(31%)’의 비중은 지난 3분기와 같은 비중을 나타냄. 그 다음으로는 ‘보유자산 매각(2%)’, ‘회사채 발행(1%)’과 ‘사채시장 조달(1%)’의 응답이 소수의견이었으며 ‘상생협력펀드 활용(0%)’에 대한 응답은 없었음. <표-5>.

<표-5> 전문건설업체의 자금조달방법 (건, %)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금융기관 차입	29 (30)	21 (28)	34 (43)	20 (31)	26 (31)
사채시장 조달	0 (0)	1 (1)	1 (1)	1 (2)	1 (1)
회사채 발행	3 (3)	1 (1)	2 (3)	1 (2)	1 (1)
상생협력펀드 활용	0 (0)	0 (0)	0 (0)	0 (0)	0 (0)
대표자 개인 자금	54 (56)	47 (63)	39 (49)	37 (58)	53 (62)
보유자산 매각	3 (3)	1 (1)	1 (1)	2 (3)	2 (2)
기타	8 (8)	4 (5)	2 (3)	3 (5)	2 (2)

3. 공사수주와 공사대금 수금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이 55.8(45.3점→55.8점)로 3/4분기보다 크게 상승, 하도급도 58.1(51.6점→58.1점)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냄 <표-6>.
 - 이번 조사결과는 앞서 살펴본 전문건설업이 후행적으로 체감하는 공사수주물량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이에 더해 지난 3분기에 주춤했던 공사발주감소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토공과 철콘 등 주요 전문건설업의 2016년 3분기 누적계약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더구나 국토교통부 등 주요 기관들의 3분기 재정집행 실적은 전분기보다 감소했거나 계획된 집행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이같은 상황에서 집행된 4분기의 재정집행이 원도급을 중심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2017년 1/4분기의 공사물량지수 전망은 원도급은 2016년 4/4분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도급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원도급의 경우 동계비수기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4분기에 비해 그리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며, 하도급은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후행적인 공사수주 등을 감안하면 계절적인 추세를 따를 것으로 예상됨.

<표-6>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 추이 및 전망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2016년 1/4분기	2016년 2/4분기	2016년 3/4분기	2016년 4/4분기	2017년 1/4분기
원도급	60.0	54.4	42.1	68.8	45.3	55.8	53.5(전망)
하도급	55.4	58.9	59.2	54.5	51.6	58.1	61.6(전망)

-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는 원도급공사가 24일, 하도급공사가 39일로 조사됨 <표-7>. [공사대금의 수령 형태]는 ‘전액 현금(73%)’ 이 가장 많았고 ‘현금+어음(18%)’ 의 비율이 크게 늘어남. ‘전액 어음(1%)’ 의 응답은 낮았으나 ‘어음대체결제수단(5%)’ 의 비중이 3/4분기보다 늘어남 <표-8>.

<표-7> 공사대금 수령 평균소요일수 (일)

	'15. 3분기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원도급 공사	23	24	24	23	24	24
하도급 공사	42	42	43	40	44	39

<표-8> 공사대금의 수령형태 (건, %)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전액 현금	62 (71)	59 (82)	51 (78)	52 (88)	54 (73)
전액 어음	3 (3)	1 (1)	3 (5)	1 (2)	1 (1)
현금 + 어음	11 (13)	7 (10)	9 (14)	4 (7)	13 (18)
어음대체결제수단	1 (1)	1 (1)	1 (2)	2 (3)	4 (5)
기타	10 (11)	4 (6)	1 (2)	0 (0)	2 (3)

- [공사대금수급]은 3/4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인 80.2(78.1점→80.2점)로 나타났으며 2017년 1/4분기에는 74.4로 이번 분기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나타남 <표-9>.

- 추후 위축되는 건설시장 및 구조조정 분위기 등을 반영해 종합건설업체 등이 긴축경영 등에 들어갈 경우 이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상황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 이럴 경우 전문건설업계 내에서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임.

<표-9> 전문건설업 공사대금수급지수 추이 및 전망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2016년 1/4분기	2016년 2/4분기	2016년 3/4분기	2016년 4/4분기	2017년 1/4분기
원·하도급 전체	86.2	80.0	81.6	80.5	78.1	80.2	74.4(전망)

- **[수령어음 평균만기일]**은 원도급은 ‘30일 이하(50%)’ 와 ‘31~60일(30%)’ 의 합계가 80%로 지난 조사에 비해 ‘30일 이하’ 의 응답이 증가함. ‘61~90일(18%)’ 은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곧 전문건설업체가 수령하는 어음 중 약 1/5의 만기일이 ‘60~90일’ 이라는 의미임. 하도급공사에서의 평균만기일은 ‘30일 이하(20%)’ 와 ‘31~60일(49%)’ 의 비율은 총 69%이지만 ‘30일 이하’ 의 응답비율이 원도급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적다는 특징을 나타냄 <표-10, 표-11>.

<표-10> 원도급공사 수령어음의 평균만기일 (건, %)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30일 이하	27 (57)	11 (33)	17 (46)	12 (44)	20 (50)
31~60일	15 (32)	15 (45)	10 (27)	10 (37)	12 (30)
61~90일	4 (9)	5 (15)	8 (22)	4 (15)	7 (18)
91~120일	1 (2)	0 (0)	1 (3)	1 (4)	0 (0)
120일 초과	0 (0)	2 (6)	1 (3)	0 (0)	1 (3)

<표-11> 하도급공사 수령어음의 평균만기일 (건, %)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30일 이하	10 (19)	6 (18)	6 (16)	5 (19)	8 (20)
31~60일	32 (62)	16 (47)	21 (57)	15 (56)	20 (49)
61~90일	5 (10)	8 (24)	9 (24)	6 (22)	12 (29)
91~120일	4 (8)	2 (6)	1 (3)	1 (4)	1 (2)
120일 초과	1 (2)	2 (6)	0 (0)	0 (0)	0 (0)

- **[수령어음의 현금화방법]**은 ‘만기일까지 보유(36%)’ 한다는 응답이 크게 떨어진 반면 시중은행 할인(29%)’ 의 응답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자금유통상황을 반영함.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21%)’ 한다는 응답도 크게 늘었으며 ‘제2금융권 할인(0%)’ 과 ‘사채시장 할인(0%)’ 의 응답은 없었음 <표-12>.

<표-12> 수령어음의 현금화 방법 (건, %)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시중은행 할인	6 (13)	8 (26)	8 (24)	4 (20)	8 (29)
제2금융권 할인	0 (0)	1 (3)	0 (0)	0 (0)	0 (0)
사채시장 할인	0 (0)	0 (0)	1 (3)	1 (5)	0 (0)
자재장비비 등으로 유통	7 (16)	5 (16)	3 (9)	0 (0)	6 (21)
만기일까지 보유	14 (31)	13 (42)	18 (53)	11 (55)	10 (36)
기타	18 (40)	4 (13)	4 (12)	4 (20)	4 (14)

4. 기술·기능인력 및 자재·장비 관련

- **[기술·기능인력 수급과 인건비지수]**는 인력수급지수는 67.4(70.3점→67.4 점)로 3/4분기보다 소폭 하락, 인건비지수도 43.0(45.3점→43.0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³⁾ <표-13>.
 - 인력수급지수는 지난 2분기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와는 동 조사가 실시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는 늘상 지적되는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와 이탈⁴⁾ 등을 꼽을 수 있음.
 -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보수와 근로여건 등의 처우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실제 공사예산에의 반영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은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산업생산은 41조원 가량, 고용은 26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하지만 건설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등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인력수급지수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건설인력의 수요로 인해 인건비지수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4) 건설업종의 평균이직률은 약 13%대 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산업평균 이직률은 4% 수준임.

<표-13>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추이 및 전망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2016년 1/4분기	2016년 2/4분기	2016년 3/4분기	2016년 4/4분기	2017년 1/4분기
인력수급	100.0	76.7	81.6	84.4	70.3	67.4	68.6(전망)
인건비	61.5	44.4	55.3	46.8	45.3	43.0	41.9(전망)

- [자재·장비수급과 자재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16년 4/4분기의 자재수급지수⁵⁾⁶⁾는 93.0(101.6점→93.0점)으로 2016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자재비지수는 51.2(53.1점→51.2점)로 2016년 1/4분기부터 시작된 하락추세를 지속함 <표-14>.
- 현재 건설현장에서 가장 수급이 어려운 자재로는 철근이 꼽히고 있으며 레미콘 역시 시멘트와 함께 골재가격의 급등에 따라 수급난이 제기되고 있음. 이같은 수급문제는 당연히 자재가격으로 이어지며 이를 두고 건설업계와 자재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임.
- 지난 믹스트럭과 철도파업 등의 여파로 인해 동계공사를 강행하는 현장들이 늘어나는 등으로 자재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며, 타워크레인같은 건설기계의 임대도 동일한 상황임. 더구나 2017년에 접어들어도 아파트 등의 착공물량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더구나 골재수급난의 경우 2017년에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레미콘 등 이와 관련된 기초자재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에 따라 자재비지수도 단시일에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5) 동 항목은 2013년까지 100~120 사이의 조사치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90대로 하락해 그 추세를 대부분 이어왔으며 이번 조사에서 다시 100을 넘어섬.

6) 통상 자재수급지수는 자재비지수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건설환경에서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임. 하지만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조정받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인해 자재비는 공사원가상승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함.

<표-14> 전문건설업 자재·장비 수급 및 자재비지수 추이 및 전망

	2015년 3/4분기	2015년 4/4분기	2016년 1/4분기	2016년 2/4분기	2016년 3/4분기	2016년 4/4분기	2017년 1/4분기
자재·장비수급	104.6	96.7	98.7	98.7	101.6	93.0	90.7(전망)
자재비	69.2	61.1	64.5	55.8	53.1	51.2	47.7(전망)

5. 하도급 불공정거래

- [이중계약서 작성경험]은 응답업체의 12%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표-15>.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설정]은 8%가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는 14%의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됨 <표-17>.

<표-15> 이중계약서 작성경험 유무 (건, %)

	'15. 3분기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경험있음	4 (7)	7 (8)	7 (10)	3 (4)	6 (11)	10 (12)
경험없음	54 (93)	79 (92)	65 (90)	74 (96)	50 (89)	71 (88)

<표-16>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 유무(건, %)

	'15. 3분기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경험있음	4 (7)	9 (10)	6 (8)	3 (4)	5 (9)	6 (8)
경험없음	54 (93)	77 (90)	65 (92)	73 (96)	50 (91)	73 (92)

<표-17> 하도급계약시 부당감액 피해 (건, %)

	'15. 3분기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⁷⁾	'16. 4분기
경험있음	8 (14)	14 (16)	8 (12)	8 (11)	6 (11)	11 (14)
경험없음	50 (86)	71 (84)	61 (88)	68 (89)	48 (89)	69 (86)

7) 본 조사문항은 2014년 3분기부터 추가된 것임.

8) '16년 2분기와 3분기에 동 조사문항은 동일한 응답결과를 보였음.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용’ 한다는 응답이 75%, ‘미사용’ 은 8%, ‘수정·변경 사용한다는 응답비율’ 은 16%로 집계됨으로써 다시금 사용현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18>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건, %)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사용	72 (83)	53 (78)	65 (88)	50 (88)	60 (75)
미사용	7 (8)	9 (13)	3 (4)	2 (4)	6 (8)
수정·변경사용	5 (6)	5 (7)	6 (8)	5 (9)	13 (16)
기타	3 (3)	1 (1)	0 (0)	0 (0)	1 (1)

- [전자입찰 하도급공사 수주시 재입찰 경험]은 응답업체의 대부분이 1~2 회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회(41%)라고 응답한 업체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남. 지난 조사까지와 달리 ‘4회 이상(14%)’ 의 응답비율은 크게 감소함 <표-19>.

<표-19> 전자입찰 재입찰 경험횟수 (건, %)

	'15. 3분기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1회	16 (62)	16 (43)	12 (48)	13 (39)	6 (29)	10 (26)
2회	7 (27)	10 (27)	6 (24)	7 (21)	5 (24)	16 (41)
3회	1 (4)	3 (8)	0 (0)	1 (3)	0 (0)	4 (10)
4회 이상	0 (0)	0 (0)	2 (8)	3 (9)	3 (14)	2 (5)
기타	2 (8)	8 (22)	5 (20)	9 (27)	7 (33)	7 (18)

- [하도급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정기간보다 길다’ 는 응답이 33%로 늘어난 반면 ‘법정기간과 동일(63%)’ 하다는 응답은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표-20>.

<표-20> 하자담보책임기간 (건, %)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법정기간보다 길다	20 (25)	14 (22)	11 (15)	11 (20)	24 (33)
법정기간과 동일	57 (71)	49 (78)	61 (84)	41 (76)	45 (63)
기타	3 (4)	0 (0)	1 (1)	2 (4)	3 (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수령했다는 응답비율은 소폭 증가한 46% <표-21>, **[미수령 사유]**로는 ‘하도급대금 직불현장(47%)’ 과 ‘이유를 알 수 없다(37%)’ 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22>.

<표-2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여부 (건, %)

	'15. 3분기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있다	33 (60)	34 (43)	24 (38)	40 (54)	23 (43)	34 (46)
없다	22 (40)	45 (57)	39 (62)	34 (48)	31 (57)	40 (54)

<표-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미수령 사유 (건, %)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수급인이 보증면제업체	3 (6)	4 (9)	3 (8)	4 (10)	3 (7)
하도급대금 직불현장	22 (41)	21 (45)	19 (50)	20 (51)	20 (47)
계약금액 1천만원 이하	2 (4)	1 (2)	3 (8)	1 (3)	4 (9)
이유모름	27 (50)	21 (45)	13 (34)	14 (36)	16 (37)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특정업체(서울보증보험)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업체는 4% <표-23>, **[수급인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10% 초과]**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10%(원도급업체가 강요한 하자보수보증율은 20%) <표-24>,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율 5% 초과]**를 강요받았다는 응답은 6%인 것으로 집계됨(원도급업체가 강요한 하자보수보증율은 10~15%) <표-25>.

<표-23> 서울보증보험 강요 유무 (건, %)

	'15. 3분기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있다	2 (4)	16 (20)	9 (14)	2 (3)	1 (2)	3 (4)
없다	52 (96)	66 (80)	57 (86)	72 (97)	53 (98)	71 (96)

<표-24>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10%초과 강요 (건, %)

	'15. 3분기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있다	1 (2)	6 (7)	3 (5)	8 (11)	3 (6)	8 (10)
없다	53 (98)	76 (93)	62 (95)	65 (89)	51 (94)	69 (90)

<표-25> 하자보수보증율 5%초과 강요 (건, %)

	'15. 3분기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있다	1 (2)	6 (7)	5 (7)	5 (7)	2 (4)	5 (6)
없다	52 (98)	76 (93)	62 (93)	68 (93)	52 (96)	73 (94)

-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는 다시 늘어난 22%였으며 동 사안은 매 조사에서 잘못된 건설현장의 관행으로 지적받고 있음 <표-26>. [산업재해발생시 공상처리 경험]은 5%였음 <표-27>.

<표-26> 원도급자의 무리한 하자보수 요구 (건, %)

	'15. 3분기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있다	6 (11)	15 (18)	16 (25)	17 (24)	8 (15)	17 (22)
없다	47 (89)	70 (82)	49 (75)	55 (76)	45 (85)	61 (78)

<표-27> 산업재해 발생시 공상처리 경험 (건, %)

	'15. 3분기	'15. 4분기	'16. 1분기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있다	0 (0)	3 (4)	4 (6)	3 (4)	4 (8)	4 (5)
없다	53 (100)	79 (96)	66 (94)	66 (96)	49 (92)	71 (95)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시점]은 지난 조사와 달리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가 가장 많은 6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도급계약 체결시(31%)’가 가장 많았음. 하지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라는 응답도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28>.

<표-28>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시점 (건, %)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하도급계약 체결시	17 (52)	10 (45)	11 (31)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11 (33)	10 (45)	21 (60)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3)	0 (0)	1 (3)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초과	0 (0)	0 (0)	1 (3)
기 타	4 (12)	2 (10)	1 (3)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사 중 상대방 원사업자의 규모]**는 시공능력평가순위를 기준으로 ‘1~30위 업체’가 22%, ‘31~100위 업체’가 33%, ‘101~200위 업체’가 22%로서, 지급보증서를 미교부받았다는 전체 응답의 55%가 시평 100위 이내, 77%가 200위 규모의 원사업자라고 응답함<표-29>.

<표-29> 지급보증서 미교부 공사 중 상대방 원사업자의 규모 (건, %)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시평 1~30위 업체	8 (35)	4 (24)	6 (22)
시평 31~100위 업체	4 (17)	3 (18)	9 (33)
시평 101~200위 업체	4 (17)	3 (18)	6 (22)
기 타	7 (30)	7 (41)	6 (22)

- **[교부대상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교부거부’가 크게 늘어난 49%,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이 22%였음. 그 밖에는 ‘계약이행보증 미제출(5%)’,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지만 실제 교부가 안됨(5%)’, ‘원사업자와 합의(5%)’가 동일 비율로 나타났음 <표-30>.

- 단 ‘원사업자와 합의’했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그간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상호 합의인지, 아니면 원도급자의 이익보전을 위한 요구를 전문건설업체가 불가피하게 수용한 것인지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3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대상인데도 교부받지 못한 이유 (건, %)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원사업자의 교부거부	6 (22)	5 (38)	18 (49)
당사의 계약이행보증 미제출	3 (11)	1 (8)	2 (5)
지급보증서는 발급, 실제 교부가 안됨	8 (30)	11 (8)	2 (5)
원사업자와 합의	8 (30)	8 (8)	2 (5)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이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에 미반영	5 (19)	4 (31)	8 (22)
기 타	6 (22)	7 (54)	5 (14)

- **[추가공사/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업체의 단 5%만이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이처럼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서의 교부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임 <표-31>.

<표-31> 지급보증서 교부 뒤, 추가공사/공기연장 등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의 교부여부 (건, %)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있 다	1 (4)	0 (0)	2 (5)
없 다	27 (96)	17 (100)	40 (95)

- **[어음만기일에 맞춰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는 역시 응답업체의 단 3%만이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됨 <표-32>. 이는 앞서의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추가보증서의 교부’ 문항과 동일한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표-32> 어음(하도급대금)의 만기일이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초과시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의 교부여부 (건, %)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있 다	1 (4)	0 (0)	1 (3)
없 다	27 (96)	18 (100)	38 (97)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개선]**을 위해서는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55%)’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32%)’과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11%)’가 필요한 방안으로 지적됨 <표-33>.

<표-3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율을 높이는 방법 (건, %)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15 (39)	8 (32)	5 (11)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9 (24)	9 (36)	24 (55)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전달	14 (37)	7 (28)	14 (32)
기 타	0 (0)	1 (4)	1 (2)

-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 교부]**는 응답업체의 96%가 하도급계약 체결시에 이루어졌다고 답변함 <표-34>. 앞서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연계해 살펴본다면 이처럼 원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관행이 불공정거래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음.

<표-34>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한 시점 (건, %)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하도급계약 체결시	46 (100)	34 (97)	50 (96)
없 다	0 (0)	1 (3)	2 (4)

-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는 지난 조사보다 응답비율이 감소한 응답업체의 1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동 문항은 원사업자가 서울보증보험을 지정한 경우를 의미함) <표-35>.

<표-35> 특정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서 강요 (건, %)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있 다	11 (21)	7 (17)	7 (13)
없 다	41 (79)	34 (83)	48 (87)

-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로는 ‘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32%)’ 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서(29%)’ 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서(23%)’ 의 순이었음 <표-36>.

<표-36> 특정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요구이유 (건, %)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액의 10% 전액을 회수 타 보증기관보다 계약이행보증 청구절차가 신속	11 (33)	7 (32)	7 (23)
기존의 업무관행에 따라	14 (42)	5 (23)	9 (29)
기 타	2 (6)	8 (36)	5 (16)

-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에 전액보상(위약벌)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경험한 응답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이같은 독소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됨 <표-37>.

<표-37> 하도급계약시 계약보증금 관련사항을 현장설명서 특기조건 등에 전액보상(위약벌)으로 규정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 (건, %)

	'16. 2분기	'16. 3분기	'16. 4분기
있 다	3 (7)	3 (8)	0 (0)
없 다	41 (93)	33 (92)	51 (100)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종합한 결과는 <표-38>에 정리된 것처럼 불법 하도급 강요,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적절하지 못한 공사대금 정산, 과도한 하자보수요구 등이 주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남.

<표-38> 불공정거래의 구체적 피해사례 (4분기 집계)

불공정거래의 발생단계	불공정거래 사례
발주자/원도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시공단가에 포함하여 입찰을 요구 -현장담당자와의 마찰로 인한 준공일 지체(지체상금 발생) -특허공사시 특허업체의 횡포를 발주자가 묵인(내역서 누락) -발주처의 지자체 내 건설업체로의 불법 하도급 강요 -하도급 미신고(관리번호 미발급)
공사수주 및 계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자재(특허 및 신기술)의 협약사만 입찰가능 -과다한 하자담보기간과 보증율(20%)/ 선급금 포기를 강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목시적 인정을 강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요구 -계약서 작성에 앞서 선공사를 요구
시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대리인의 구두지시 후 발주처의 미반영 -추가공사를 미정산 -내역에 없는 부분의 시공요구 후 공사비 미반영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급사의 한도에 따른 할인불가 어음을 지급 -어음할인료 및 간접비, 4대 보험료 미지급 -하도급공종이 아닌 전체 공사의 준공 후에 공사비를 정산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연수령을 목시적으로 요구
유지관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자보수기간의 종료 후, 유지보수문제를 하자책임으로 요구 -타 공정으로 인한 파손과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 요구

2016년 4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2017년 1월 13일 인쇄

2017년 1월 13일 발행

발행인 서명교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9-11-5953-022-7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16